

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국장 김인규)

가. 제안이유

○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및 구조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

하여 건축부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
- 건축부서의 통보내용과 직권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및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납세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정비대상 규제사무로 등록되었기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납세자가 신고하도록한 의무규정을 삭제(안 제2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27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및 구조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부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- 건축부서의 통보내용과 직권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및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납세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

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정비대상 규제사무로 등록되었기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

□ 주요골자

-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(안 제23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중 “제23조 내지 제26조”를 “제25조 및 제26조”로 한다.

제59조중 “제23조 및 법 제234조의21”을 “법 제234조의2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건축물에 대한 의무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건축물을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</p> <p>2.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</p> <p>3.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</p> <p>4.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</p> <p>5. 건축물의 구조,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, 면적을 증감한 때</p> <p>6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</p> <p>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</p>	<p>(삭제)</p>

원일, 종류,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재산세과세대장상의 직권등재)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9조(신고의무 및 직권등재)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확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(재산세과세대장상의 직권등재)
 제25조 및 제26조

제59조(신고의무 및 직권등재)

 .. 법 제234조의21

